

3. 주요요지  
○입안내용

구역명	구역면적변경(㎡)			비고
	기정	증감	변경후	
사당 제6	4,763	증) 1,027	5,790	일부추가

○추가지역현황  
 -위 치: 동작구 사당동 105-14번지 일대  
 -면 적: 1,027㎡(구유지)  
 -건 축 물: 없음  
 -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, 주차장정비지구

4. 추진경위  
 ○'91. 2.11 구역지정(건설부고시 제67호)  
 ○'91. 8.17 사업계획결정(서고시 제253호)  
 ○'93. 6.14 사업시행인가(동작구고시 제23호)  
 ○'93. 9.25 구역변경(건설부고시 제376호)  
 ○'94. 6.13 사업계획변경결정(서고시 제1994-192호)  
 ○'95. 5. 8 사업시행변경인가(동작구고시 제1995-19호)

5. 변경결정사유  
 ○사당4구역 재개발사업 완료후 기부채납되는 공공공지가 당해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맹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, 이를 활용하여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, 당해구역 북측에 개설예정인 소로3류 18호(4m) 도시계획도로의 일부토지(당해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)를 당해구역에 포함하고자 함.

1. 건 명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 
 2. 제안이유  
 ○강남구 도곡동 산 34-8 입야 195㎡는 폭원 6m 도로에 의하여 도곡근린공원에 서 분리되어 있는 자투리 공원용지이고  
 ○강남구 도곡동 150 외 2필지 315㎡(사유지 192㎡, 구유지 123㎡)는 도곡근린공원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 
 ○서울시 도시공원정비기준에 의거 자투리 공원용지는 해제하고, 공원용지에 접한 토지는 공원에 편입하여 합리적으로 공원 경계를 조정코자 함.  
 ※공원지정 대상인 도곡동 150 전 192㎡(사유지)는 기부채납 예정

출출년월일: 1995. 9. 6.  
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
3. 주요요지  
○입안내용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변경전'	변경후	증 감	
변경 결정	도 곡 근 린 공 원	강남구 도곡동 150 일대	249,897	250,107	증 120	공원의 불합리한 경계조정

4. 참고사항  
 ○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, 주차장정비지구(일부)  
 ○공람공고중 의견접수: 없음

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